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 규정(안 제14조)

-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나. 준용 규정 신설(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청렴정책팀, 규제개혁T/F팀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숙련기술자”라 함은”을 ““숙련기술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최고장인”이라 함은”을 ““최고장인”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등이 남보다”를 “등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숙련기술자 홍보 등”)을 “(숙련기술자 홍보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조치를 강구”를 “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품 및 품질”을 “제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를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숙련기술자”란----- ----- ----- -----.
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최고장인”이란----- ----- ----- ----- ----- ----- ----- -----.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u>남보다</u> 뛰어난 자	3.----- ----- <u>등이</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숙련기술자 홍보 등) 시장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숙련기술자 개발·생산한 제품 및 품질 홍보 지원
3.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4. 제12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단체에 의한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과 관련된 행사 홍보

<신설>

<신설>

제17조 (생략)

제14조(숙련기술자 홍보 등 지원)

-----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1. (현행과 같음)
- 2.-----제
품의-----
- 3.-----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
4.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숙련기술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과 실·과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남동수
	담 당	박만용
	담 당 자	박세현 (480-6213)